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b>제 출 자</b>	<b>조배식의원 외 11명</b>
<b>제출연월일</b>	<b>2020. 3. 13.</b>

#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13호
----------	------

발의연월일 : 2020. 3. 13 .

대표발의자 : 조배식

공동발의자 : 김진호, 박승용  
김만중, 구본선  
이계천, 박영자  
서 원, 조용훈  
김남충, 최정숙  
차경선

## 1. 제안이유

논산시의회 의원이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다. 의원연구단체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 라. 연구활동 기간 및 계획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마. 의원 연구단체 및 정책개발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 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안 제13조)
- 사. 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

○ 『2020년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나. 예산조치 :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 내 사용

다. 기타사항 : 조례안 붙임

- 입법예고 : 2020. 3. . ~ 2020. 3. .(00일간)

##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자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란 논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조례, 의정 및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 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 구성) ①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에는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있어야 한다.

- ② 각 의원은 1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 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 ④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 ⑤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체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6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위원회의 승인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제6조(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및 의원정책 개발비 책정,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5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구성원을 참석토록 하여 연구 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①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가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연구활동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 기간)**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제11조(의원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의원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지급된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정책 개발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제11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임기가 만료·개시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각각 5월말, 12월말까지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한 후,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1. 연구단체명 :
2. 대 표 자 :
3. 연 구 목 적 :
4. 구성원 인적사항( 명)

구 분	성 명	서명날인	비고
대 표			
회 원			
회 원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자 대표 :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연구단체 의원 변동사항 통보서

연구단체명		
대표자		
변동의원	당초	의원
	변경	의원
변동일자	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연구단체 등록 의원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 ○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연구 활동 계획서

의원연구단체명			
연구 내용		주 제	
		목 적	
연구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 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의원연구 단체 활동비	총 액	금	원(금 원)
	산출내역		
의원정책 개발비	총 액	금	원(금 원)
	용역목적		
	주요내용		
특이 사항			

붙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 ○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

##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	당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의원연구 단체 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의원정책 개발비	총 액	금                      원
	용역목적	
	주요내용	
특기사항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 ○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

## 심사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주제		
심사 결과	내용	
	결과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지원 신청서

구 분		주 요 내 용	
의원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활동 지원신청액		연구활동비 지원결정액(A)	
기 수령액(B)			
이번 신청액(C)			
수령잔액 (D=A-B-C)			
수령 인	성명(예금주)		
	은 행		
	계좌번호		
비 고			

붙임 :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 ○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의원연구단체명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 총비용	수령액	금	원 (₩ )	
	집행액	금	원 (₩ )	
	잔액	금	원 (₩ )	
	집행내역	세부내역	금액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 붙임 1. 연구활동(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2.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정산서)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대표    ○ ○ ○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의원정책개발비**

-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 × 500만원)